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6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이형석·강득구·강병원

강선우・강준현・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노웅래 · 도종화 · 맹성규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박범계 • 박상혁 • 박성준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변재일 · 서동용 · 서삼석 서영교 · 서영석 · 설 훈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신정훈 · 신현영 · 안규백 안민석·안호영·양경숙 양기대 · 양이원영 · 양향자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오영훈 • 우상호 • 우원식 위성곤・유기홍・유동수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윤후덕 • 이개호 • 이광재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이성만 • 이소영 • 아수진(비)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선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이정문 · 이탄희 · 이학영 이해식 · 인재근 · 임오경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정일영 · 정정순 · 정청래

정춘숙·정태호·정필모 조승래·조오섭·조승천 조정식·주철현·진선미 진성준·천준호·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7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안 제1조)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안 제1조의2

신설)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안 제2조),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 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말 한다.

제2조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범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 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 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 3.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제1조(목적)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 -----헌정질서 파괴 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 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 · 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 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 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 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 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 란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 인 주민에 대한 공격 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 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 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의 <u>헌정질서</u>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 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 다.

<신 설>

제	2조(광소 [∞]	시효의	의 정	지)		
						<u>헌정</u>	질서
	파괴	범죄	와 빈	ŀ인S	E적	범죄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 3.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

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조사위원회"를 포함한다) 발 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 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